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374 발의연월일: 2024. 12. 10.

발 의 자:이해식・서영교・한민수

채현일 • 박해철 • 박용갑

박상혁 • 박정현 • 염태영

서영석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회가 본회의를 개의할 수 없는 등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계엄 선포의 효력이 자동적으로 상실되도록하는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통령은 계엄 선포 후 48시간 이내에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국회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계엄 선포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함으로써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의 사후적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계엄 선포의 효력 상실) 대통령은 계엄이 선포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국회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계엄 선포는 효력을 상실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4조의2(계엄 선포의 효력 상실)
	대통령은 계엄이 선포된 때로
	부터 48시간 이내에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국회
	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국회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계엄
	선포는 효력을 상실한다.